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병원급 의료기관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 등 관련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비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대응 지침 (2판)

2020. 4. 2.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주요 개정사항

① '폐쇄병동 입원 시 조치사항' 보완

- 코로나19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의 대응 흐름도 추가

② '타 병원 이송 시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조치사항' 추가

- 코로나19 증상 치료 등을 위하여 정신질환자 타 병원 이송 시 국가입퇴원 관리시스템 조치사항(전원/전과/퇴원) 추가

[신규비교표]

구분		현행(1판)	변경(2판)
폐쇄병동 출입 관리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종사자는 2주간 출근을 중단할 것	해외 여행력 있는 종사자는 2주간 출근을 금지할 것
입원시 조치사항	유증상자	-	1인실 격리 관찰 권고 및 증상 치료
	무증상자	폐쇄병동 입실하되 14일 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가능하다면 1인실 격리관찰 권고	현행 유지
국가입퇴원 관리시스템		-	코로나19 확진 환자 : 전과 처리 코로나19 음성 환자 : 전원 처리

목 차

I. 개 요	1
1. 목적	1
2. 필요성	1
3. 기본방향	2
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3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3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3
3. 폐쇄병동 출입 시 관리 강화	4
4. 접촉의 최소화: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취소	6
5. 폐쇄병동 입원 시 조치사항	6
6. 입원환자 또는 종사자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사항	9
7. 타 병원 이송 시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조치사항	10
▷ 서 식 ◁	
1. [서식1-1 예시1] 환자(종사자) 건강 모니터링	13
2. [서식1-2 예시2] 환자(종사자) 건강 모니터링	14
3. [서식2 예시] 접촉자 등 집중 모니터링 대상 환자(종사자) 건강 모니터링	15
4. [서식3-1 예시1]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16
5. [서식3-2 예시2]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17
6. [서식4] 감염병 발생 신고서	18
7. [서식5 예시]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 관리 일일 체크리스트	20
8. [서식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현황 자체점검표	21
▷ 붙임 자료	22

코로나19 관련 준수사항

1. 의료기관(개설자) 준수사항

○ 시설관리

- 입원실 내 환기기준 준수(시간당 6회 순환), 위생관리 철저
- 외부인 출입통제(병문안 등 금지, 출입자 명부 작성)
- 종사자, 환자의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을 매일 체크하는 기관별 책임자 1명 지정
- 코로나19 관련 관리 일일 체크리스트 작성(서식 5)
- 코로나19 대응 현황 자체점검표(서식6) 제출(매주 월, 관할 보건소)

○ 종사자(의료인, 직원, 간병인 등) 관리

- 대면회의, 회식 자제
- 출·퇴근 또는 근무 중 발열, 기침 여부 확인(서식 1)
-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있는 경우 업무배제(출근 금지)
- 담당 의료진 외 다른 종사자의 환자 접촉 최소화
- 종사자의 국내외 감염 위험지역 방문 자제 권고 및 방문력 조사

○ 환자관리

- 발열, 기침 여부 등 건강상태 모니터링 철저(서식 1)
-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있는 경우 1인실 격리,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자체 검체채취 또는 지자체에 진단검사 협조 요청)
- 병원 내 환자 이동 통제
- 확진자 발생 시 이송절차 마련(보호자에게 이송 통지, 전원 소견서, 의무기록, 보호자 연락처, 처방약, 개인 소지품 등 전원에 수반되는 자료와 물품 이관)

2. 종사자(의료인, 직원, 간병인 등) 준수사항

- 마스크 착용, 비누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 병원 업무 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 하기
 -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자제
 - 종교행사, 결혼, 장례식 등 사람 많은 곳 피하기
-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있는 경우 즉시 병원에 알리고 출근하지 않기*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진단검사 후 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 최근 2주내 국내외 코로나 감염 발생 지역 방문 이력,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천지교회와 관련 있는 경우 병원에 알리기

3. 환자 준수사항

- 발열, 기침 등 몸상태가 이상한 경우 즉시 의료진에 말하기
- 불필요한 병원 내 이동 자제
- 다른 환자들과 거리두기
- 병문안 거절하기(전화나 화상통화 이용)

I 개요

1.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1.20.),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2.23., 경계→심각)
 - 감염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본 지침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신의료기관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

-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 전파 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전파 특성
 - 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전염력이 높고
 -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2. 필요성

-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관리체계 필요
 - 병동 출입이 자유로운 의료진 등 종사자가 감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감염예방 조치 필요

- 면회, 봉사 등을 위한 외부인 출입이 가능하고 입원 환자도 외출, 외진 등으로 출입 가능하므로 **출입시 감염예방 절차가 있어야 함**
 - 다수 환자가 참여하는 치료 프로그램 등은 감염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폐쇄병동 내 집단 활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
-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신체 활동이 자유롭고 병동 안에서 이동이 활발하여 평소 환자간 접촉이 빈번하므로 **접촉을 줄이는 노력이 있어야 함**
 - 발열 등 신체 증상에 대한 표현이 미흡하여 조기에 증상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증상 관찰이 필요**
 - 개인위생에 취약하고 교육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마스크 착용, 손위생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됨**

3. 기본방향

- 감염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코로나19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종사자(의료인력뿐만 아니라 폐쇄병동 출입자 모두 포함, 이하 같다) 및 방문객 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기 인지 및 전파 방지 조치 실시**
- * 「위생·청소/소독/환기·근무 환경 개선, 발열 등 주기적 모니터링 및 업무배제
- 병원 내에서 **코로나19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병원 내 감염관리체계 구성

- 감염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함

* 감염관리담당자(의사, 간호사 등), 직원건강관리부서, 환경관리부서, 교육부서 등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다양한 구성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팀 구성

- 종사자·방문자(자원봉사자 포함) 등 명단 작성·보관

* 주소, 연락처, 근무 시간 또는 방문시간 등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관리대책 등 수립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붙임1~8]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환경 소독 및 위생 관리

- 병원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 손 세척제(액체비누, 알콜 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후에는 종이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병원 내 휴지를 비치하며 기침 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병원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
 - *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병원 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 병원 내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3. 폐쇄병동 출입 시 관리 강화

□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안내

□ 환자·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서식 1)

⇒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1) 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 방문자는 출입 금지

(2) 환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

□ 다음과 같은 경우 종사자는 출근 또는 폐쇄병동 출입을 중단할 것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종사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폐쇄병동 출입을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고 출근 중지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 (참고) 코로나19 행동수칙 中 [유증상자]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 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② 해외 여행력 있는 종사자는 2주간 출근을 금지할 것

- 관리자는 상기 ①, ② 조건에 해당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휴가 등 조치 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예시) 근로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관리자 등은 종사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관리할 것

- 의심환자 발생 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실을 시설 내 확보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환자의 면회·외출·외박 금지, 가족에게 안내(SMS, 유선전화 등)

-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타 병원 협진 등) 복귀 후 14일 간 집중 모니터링*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일일 2회 → 4회 이상(4~6시간/일 간격) 확인하고 기록(서식 2)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복귀 시 증상 확인 철저 및 손위생 실시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격리 조치 및 검사 시행

□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

- 자원봉사자, 방문자 등 외부인 폐쇄병동 출입 금지

- 자원봉사자 등의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위험요인 파악,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확인하여 기록(서식 3)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출입 금지
 - 출입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실시
- 병원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토록 안내

4. 접촉의 최소화: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

- 입원 환자와 종사자 등 출입자들과 접촉 줄이기
 - 환자와 종사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 환자의 진료, 간호, 교육 등 제공 시 반드시 마스크, 손소독 실시
 - 환자와 접촉할 때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거나 수시로 손소독제를 직접 환자에게 적용하여 소독하도록 유도
- 입원 환자 간 접촉 줄이기
 - 식사 시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 공간 일시 폐쇄, 병실별 TV 설치 등 병실 내 휴식 유도
 - * 휴게실 등에서 다과 및 점심 식사 같이 먹지 않기
 - 집단 행사, 교육, 소규모 모임 등 연기 또는 취소
 - 검사 등 환자 이동 시 환자 간 접촉을 최소화한 이동 동선 마련

5. 폐쇄병동 입원 시 조치사항

-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한 평가 시행

- 신규 환자 또는 타 병원에서 전원한 환자의 경우 입원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 위험지역 방문력, 확진자와 접촉력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 확인 필수(의사 문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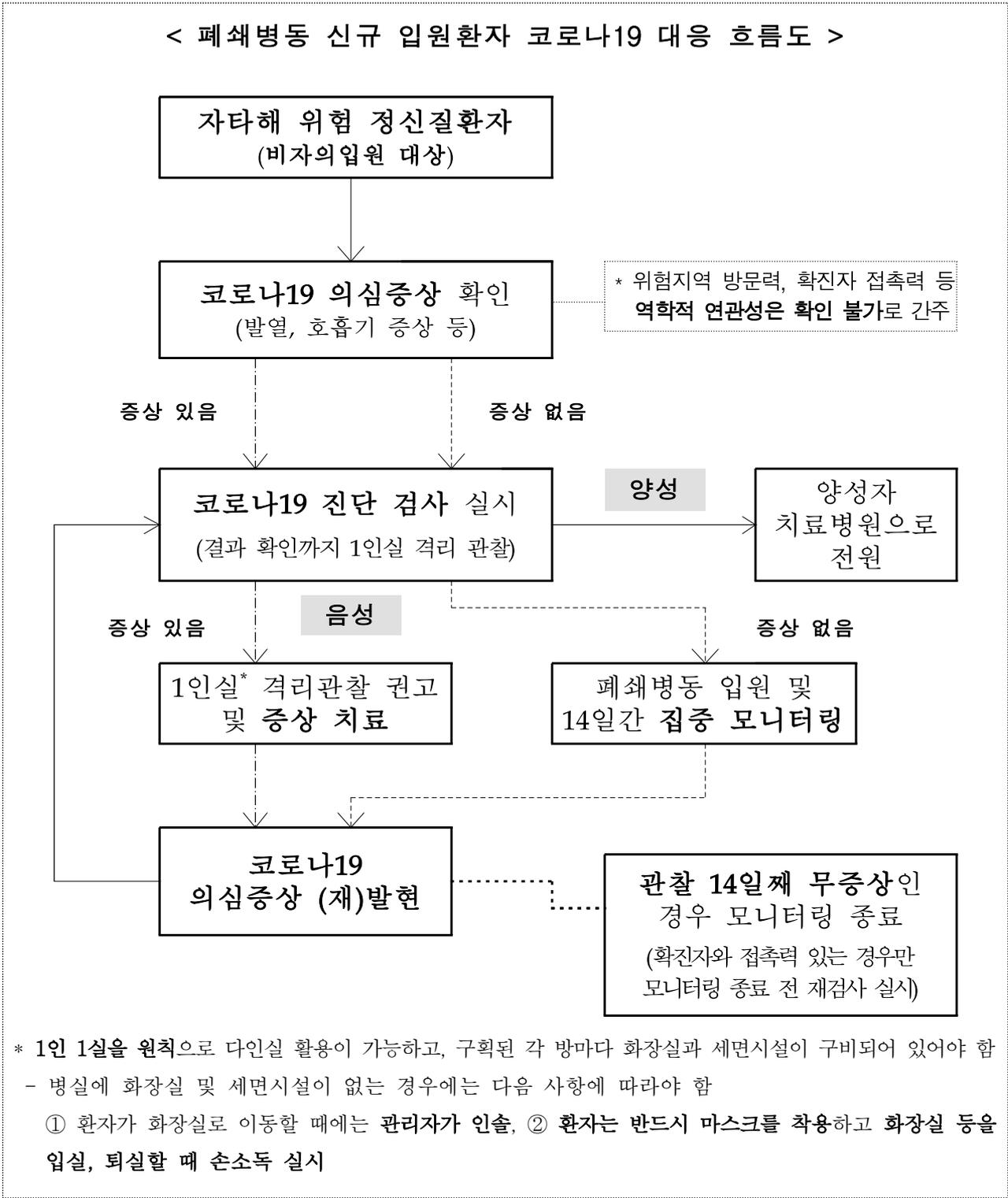
□ 코로나19 발생 신고 및 진단검사

- 환자의 증상 확인 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고 및 진단검사 시행
 - 비자의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44조, 제50조에 따른 입원) 환자는 임상증상, 위험지역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등의 확인이 곤란하므로, 조사대상 유증상자(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분류하여 신고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 자체 선별진료소 또는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여 선별진료소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협조 등을 받아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에서 채취

□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는 격리 유지

- * 1인실 등 격리병실(다인실을 1인 격리병실로 활용 가능)이 없는 경우 보호실 활용 가능
- ‘양성’인 경우에는 코로나19 양성 환자 치료병원으로 전원
- ‘음성’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1인실* 격리 관찰 권고 및 증상 치료**
 - * 1인 1실을 원칙으로 다인실 활용 가능, 구획된 각 방마다 화장실과 세면시설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함
 - 병실에 화장실 및 세면시설이 없는 경우 환자가 화장실 등으로 이동할 때에는 ①관리자가 인솔, ②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화장실 등을 입실, 퇴실할 때 손소독 실시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폐쇄병동에 입실하되 14일 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가능하다면 1인실 격리관찰을 권고
 -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일일 2회 → 4회 이상(4~6시간/일 간격) 확인하고 기록(서식 2)

○ 모니터링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격리 및 검사 시행



□ 신고 절차

- 관할 보건소에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발생 신고(서식 4)

- 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 입력, 비고란 필수 작성(신고서의 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 선택 후 반드시 조사대상 유증상자 입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사례정의에 해당되어 보건소로 신고된 자(비고란에 해당 구분 반드시 기록)에 대해서만 PCR 검사 및 격리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감염병 발생정보			
발병일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진단일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신고일	2020 - 02 - 28		
확진검사결과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radio"/> 검사 진행중 <input type="radio"/> 검사 미실시		입원여부
환자 등 분류	<input checked="" type="radio"/> 환자 <input type="radio"/> 의사환자 <input type="radio"/> 병원체보유자 <input type="radio"/> 그 밖의 경우(환자이름)		
비고(특이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p>[의사환자 구분]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p> <p>[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p> <p>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2: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방문 후 유증상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3: 국내 집단발생관련 유증상자</p> </div>		
사망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생존 <input type="radio"/> 사망		

- 신고서의 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 선택 후 반드시 「조사대상 유증상자」 입력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2: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방문 후 유증상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3: 국내 집단발생관련 유증상자

6. 입원 환자 또는 종사자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코로나19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코로나19 의심환자는 진단검사로 확진이 되기 전까지 1인실 등 격리실에 격리하고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도록 조치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
-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는 보건용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
 - 이송할 때 확진자와 접촉력이 없거나 불확실한 의심환자는 수술용(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이송자는 N95 동급 마스크를 착용
 -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는 수술용(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송자는 개인보호구 4종* 또는 레벨D 개인보호구 착용
- * 마스크(N95 동급), 라텍스 장갑, 긴팔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 환자 이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공간에서 보건소 담당자가 검체 채취함

□ 의심환자 이송 후 조치사항

- 의심환자의 이송 이후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소독
- 의심환자와 접촉한 환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서식 2)
 - 의심환자와 접촉한 종사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하며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업무 복귀
 - 의심환자와 접촉한 환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실에 배치하고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해제
 - 단,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토록 조치
- * 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반드시 보건용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

7. 타 병원 이송 시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조치사항

□ 코로나19 확진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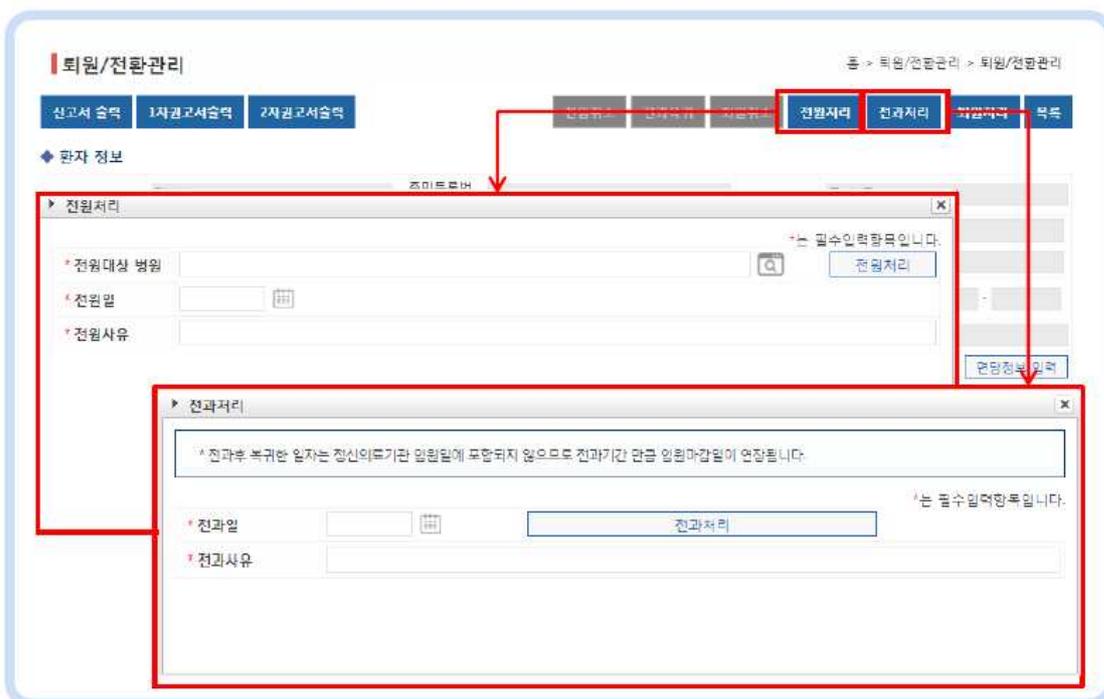
- **코로나19 증상 치료**를 위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이송(같은 병원 격리병실 등 이동 시 포함) 시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전과'** 처리
 - 다만, 입원적합성 심사 전인 경우 **'퇴원'** 처리
- **코로나19 치료 기간(전과 기간)이 30일 이상**이 될 경우 시스템상 **'복귀'** 처리 후 **'퇴원'** 처리
 - **격리 해제 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입원 신고 절차를 밟아 새로운 입원 진행

□ **코로나19 음성 환자**

- 병원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등으로 타 병원(정신건강의학과)로 이송 시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전원'** 처리
 - 다만, 입원적합성 심사 전인 경우 **'퇴원'** 처리 후 새로운 입원 진행

※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전원/전과처리

1) 퇴원/전환관리 > 퇴원/전환관리 > 상세 - 전원/전과처리



- ① **전원** : A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환자가 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로 전원하여 해당 병원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상 **별도의 비자의입원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계속 입원상태로 유지** 하기 위해 사용
- ② **전과** : A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A/B병원 내과 등
- 자병원 혹은 타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외의 다른 치료를 위해 **임시전과 (30일 이내)**를 하는 경우 사용, 전과 기간은 정신건강복지법 상 입원기간 미산입. 즉 **전과 기간 만큼 입원마감일 자동연장**
 - 정신건강의학과로 미복귀 후 바로 퇴원하더라도 시스템상에서는 반드시 '복귀' 처리 후 '퇴원' 처리 진행

서식1-1

환자(종사자) 건강 모니터링 [예시1]

대상자명	증상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	14일차	15일차	16일차	17일차	~	종료일	
홍길동	체온 ℃	오전	36.5	36.5	36.5	36.5	36.5	36.5	37.5	36.5	36.5	36.5	36.5	36.5		
		오후	36.5	36.5	36.5	36.5	36.5	38.3	37.0	36.5	36.5	36.5	36.5	36.5		
	호흡기 증상										기침					
	기타 증상															
	검사 결과							음성			음성					
임격정	체온 ℃	오전	36.5	36.5	36.5	36.5	36.5	36.5	36.5							
		오후	36.5	36.5	36.5	36.5	36.5	37.0	38.5							
	호흡기 증상															
	기타 증상															
	검사 결과								양성							
심청이	체온 ℃	오전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오후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호흡기 증상															
	기타 증상						두통									
	검사 결과						음성									
	체온 ℃	오전														
		오후														
	호흡기 증상															
	기타 증상															
	검사 결과															
	체온 ℃	오전														
		오후														
	호흡기 증상															
	기타 증상															
	검사 결과															

(발열 : 37.5℃ 이상, 호흡기 증상 : 기침, 가래, 인후통, 호흡곤란, 코막힘, 콧물 등, 기타 증상 : 두통, 오한, 근육통, 관절통, 피로감 등)

※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록해야함

서식2

접촉자 등 집중 모니터링 대상 환재(종사자) 건강 모니터링 (예시)

대상자명	증상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14일차
홍길동	체온 ℃														
	호흡기 증상														
	기타 증상														
검사 결과															
임격정	체온 ℃														
	호흡기 증상														
	기타 증상														
검사 결과															
심청이	체온 ℃														
	호흡기 증상														
	기타 증상														
검사 결과															
	체온 ℃														
	호흡기 증상														
	기타 증상														
검사 결과															

(발열 기준 : 37.5℃ 이상, 호흡기 증상 :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 기타 증상 : 권태감, 인후통 등)

서식4

감염병 발생 신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9. 11. 22.>

감염병 발생 신고서

※ 뒤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수신자: [] 질병관리본부장 [] _____ 보건소장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성별 []남 []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거주지 불명 []신원 미상	직업

[감염병명]

제1급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제2급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수두(水痘) []홍역(紅疫) []콜레라 []장티푸스
제3급	[]파상풍(破傷風)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發疹熱) []쓰쯘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제3급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댕기열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발생정보]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신고일	년 월 일
확진검사결과	[]양성 []음성 []검사 진행중 []검사 미실시	입원여부	[]외래 []입원 []그 밖의 경우		
환자 등 분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그 밖의 경우				
비고(특이사항)					
사망여부	[]생존 []사망				

[신고의료기관 등]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진단 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고기관장 성명

[보건소 보고정보]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환자의 소속기관명	환자의 소속기관 주소
추정 감염지역 []국내	
[]국외(국가명: _____ / 체류기간: _____ ~ _____ / 입국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고방법

1.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린 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신고한 감염병환자 중 확진검사결과 또는 환자 등 분류정보가 변경되거나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관할 보건소로 통보해야 합니다.
2. 감염병에 따라 환자상태 및 감염병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신고서와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감염병 발생을 신고한 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만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4. 제2급감염병 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급감염병 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
5.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소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으로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6.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내 감염병웹신고]을 통해 신고합니다.
7. 관할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신고 받은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이전 보고합니다.

작성방법

[수신자] 해당되는 수신자에 √표하고, 수신자가 보건소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보건소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

[환자의 인적사항]

- (1) 성명: 만 19세 이하인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과 보호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감염병명] 해당하는 감염병명에 √ 표를 하며,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중후군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증상 및 징후를 적습니다.

[감염병 발생정보]

- (1) 발병일: 환자의 증상이 시작된 날짜를 적습니다(병원체보유자의 경우에는 발병일이 없으므로 “0000-00-00”을 적습니다).
- (2) 진단일: 신고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감염병으로 처음 진단한 날짜를 적습니다.
- (3) 신고일: 신고의료기관 등에서 관할 보건소로 처음 신고한 날짜를 적습니다(팩스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팩스 송신일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입력일을 적습니다).
- (4) 확진검사결과: 질병관리본부장이 고시한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5) 환자 등 분류: 검사결과 해당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밖의 경우”란에 √표를 합니다.
- (6) 사망여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사망”란에 √표를 하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의료기관 등]

- (1) 신고인이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요양기관 정보,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성명 및 의료기관장의 성명을 적고, 신고인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소속된 기관의 주소·전화번호와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성명 및 소속기관장의 성명을 적습니다.
- (2)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요양기관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기관장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보건소 보고정보]

- (1) 환자의 소속기관명 및 주소: 환자가 소속된 직장(사업장), 학교(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포함합니다) 및 군부대 등의 기관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 (2)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만 본인의 국적을 적습니다.
- (3) 추정 감염지역: 국외 체류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국외”란에 √표를 하고, 국가명(체류국가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명을 적습니다), 체류기간 및 입국일자를 적습니다.

서식5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 관리 일일 체크리스트 [예시]

○ **확인일시:** 20 년 월 일 (요일) 시

○ **확 인 자:** 소속 _____ 이름 _____ (서명)

체크리스트		해당란에 ○ 표시		비고
		예	아니오	
협력체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연락체계 (격리시설-관할 보건소-관할 사군구 및 사도) 	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인력 배치 및 관리(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관리책임자(의료인)가 지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관리(간병인, 방문객 등) 전담자 지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간병인 포함) 명부와 건강상태가 작성 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직원의 일일 건강체크를 시행하고 있는가 (발열, 호흡기증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직원대상 감염병예방관리 교육을 수행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직원이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를 상시 착용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동선에 맞춰 개인보호구가 상시 비치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보호구를 탈의하고 새롭게 착용하는 장소가 별도 지정되어 있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실이 구비되어 있는가 				
기타 특이사항				
<p>(자유기술)</p>				

서식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현황 자체점검표

요양 기관	기호 : 명칭 : (직위)	대표자		
담당자	(성명)	연락처	전화	
			팩스	

구분	항목	자체점검결과	비고
종사자, 간병인 현황	1) 폐쇄병동 근무(출입) 종사자, 간병인의 해외 여행 이력 및 발열, 기침 등 코로나 19 의심증상 관리 여부 * 기록 포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해외 여행력 있는 종사자, 간병인 수	종사자 ()명 간병인 ()명	
	3) 2)에 해당되는 사람 중 업무에서 배제된 종사자, 간병인 수	종사자 ()명 간병인 ()명	미배제 사유
	4)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 간병인 수	종사자 ()명 간병인 ()명	
	5) 4)에 해당되는 사람 중 업무에서 배제된 종사자, 간병인 수	종사자 ()명 간병인 ()명	미배제 사유
방문객 현황	1) 폐쇄병동 출입 방문객의 해외 여행 이력 및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관리 여부 * 해당자 폐쇄병동 방문 금지 및 기록 포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방문객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 실시 여부(마스크 착용, 손소독 실시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방문객 명부 작성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환자 현황	1) 폐쇄병동 환자 중 원인불명 폐렴증상 발생자 수	치료중 ()명 전원 ()명	
	2) 폐쇄병동 내 치료 중인 원인불명 폐렴증상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실시 여부	실시 ()명 양성 ()명 음성 ()명 진단중 ()명 미실시 ()명	미실시 사유
	3) 주기적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확인 여부 * 기록 포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020. . .

위 내용 확인자(대표자)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I. 감염예방

개인 위생 교육·홍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위생환경 개선(손세정제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에 대한 소독 강화

* 문 손잡이, 난간, 화장실 및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테이블,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엘리베이터 버튼 등

- 시설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II. 직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직원 및 시설종사자, 방문객 출입시 발열 확인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 또는 방문객은 출입 금지

사전에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직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

III. 사회적 거리두기

종사자 또는 방문객 등과 서로 악수를 하지 않는 등 접촉하지 않기

직원좌석 간격(최소 1m)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교차실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이용공간 일시 폐쇄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1339, ☎ 지역번호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어르신이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발열, 호흡기 증상이(기침, 목아픔 등) 나타나면

-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고 외출, 타지역 방문 자제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문진 시



환자의 해외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등 반드시 확인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의심환자 발생 시



STEP1 선제적 격리

STEP2 코로나19 검사 실시

* 관할 보건소 신고 필수

!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구역 및 진료절차 구분하여 운영 !

발행일 : 2020.2.27.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접이형 제품 착용법

- 1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 2 고정심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 3 머리끈을 귀에 걸쳐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 4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5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컵형 제품 착용법

- 1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 2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 3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 4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쳐 고정합니다
- 5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6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당신의 여행력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말해주세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해외여행력이란?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80조(벌칙)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2020.3.2.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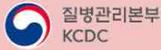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2020.3.2.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80조(벌칙)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자가치료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격리해제일까지 본인의 발열,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모니터링 방법

-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2회 이상 연락 시, 체온, 증상 알려주기
-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후 모니터링 서식에 기록하기(서식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권태감
- ☑ 인후통
- ☑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 폐렴

2020.3.2.

1. 환경청소·소독 담당 직원

- ① (교육) 청소나 소독을 담당할 직원은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
- ② (개인보호구) 직원은 청소나 소독 시 개인보호구[N95 마스크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전신보호복 또는 소매를 덮는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덮개 또는 고무장화, 2중장갑(겉장갑은 고무장갑)] 를 착용

2. 환경청소·소독 방법

- ① 병원균의 분무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빗자루나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청소 방법 보다는 청소용액이나 소독제를 적신 걸레를 이용하여 청소를 시행함
- ② 환경 표면에 유기물이 있으면 적절하게 소독이 되지 않으므로 환경 소독 전 표면을 닦아냄(cleaning)
- ③ 모든 비투과성 표면(천장과 조명 포함)은 0.1%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 또는 이에 상당한 환경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타올 또는 밀걸레 등으로 철저히 닦음
- ④ 투과성 표면은 가능한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소독액에 침적
- ⑤ 청소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 단, 청소도구를 재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청소도구는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
- ⑥ 소독이 끝나면 오염의 정도를 고려해 최소 2시간 이상 환기(시간당 6회 이상 환기)를 한 후 체크리스트로 완결성 점검

3. 소독제 종류 및 사용법

-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소독제로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 권장¹⁾²⁾³⁾), 알코올(국소 표면인 경우) 등이 포함되며, 살균력이 입증된 바이러스용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음
- * 환경소독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페놀화합물 (phenolic compounds), 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peroxygen compounds) 등이 적절, H₂O₂ vapor, H₂O₂ dry mist 등 사용 가능*
- * 안전을 위해 잘 훈련된 사용자에 의해 실시하며, 제조사 방침을 엄격히 준수
-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할 경우 시중에 판매하는 락스의 농도를 확인하여 유효염소 농도를 0.1% 또는 1,000 ppm으로 희석(5% 락스 기준 20mL를 물 1,000mL에 희석)
- ※ 소독제 사용 시 제조사의 희석배율, 접촉시간, 취급 주의사항 등 권장사항을 따름

1) Best Practices for Environmental Cleaning in Healthcare Facilities: in Resource-Limited Settings(ver 1), 2019
 2) Novel coronavirus (2019-nCoV) Guidance for primary care Management of patients presenting to primary care Version 5.0, 2020, NHS
 3) Novel coronavirus (2019-nCoV)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guidance Updated 3 February 2020. PH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7-3판)’ 발췌, 지침 개정 시 개정사항 반영 적용

□ 사례 정의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local transmission)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코로나19 → 발생동향 → 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 분류국가 참조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신고 대상 >

○ (확진)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	
○ (조사*)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 과 역학적 연관성	
○ (조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붙임11

코로나19 관련 정보

* 바이러스 특성이 밝혀지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질병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질병 코드 : U07.1
병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전파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잠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4일 (평균 4~7일)
진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증 치료 : 수액 공급,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치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명률은 1~2%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 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사례
관리	<p><환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p><접촉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신 없음 올바른 손씻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기침 예절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7-3판)’ 발췌, 지침 개정 시 개정사항 반영 적용

1] 검체 종류

- 상기도(구·비안두 도말 혼합) 검체,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
- 경증인 자 :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검사 의뢰

번호	검체 종류		용기 및 용량	비고
1	상기도	구인두도말물 비인두도말물	(용기) 하나의 VTM 배지에 비인두와 구인두 도말물 동시 채취	분리된 독립공간에서 채취
2	하기도	가래	(용기) 멸균 50ml 튜브 (검체량) 3ml 이상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 가래 유도 금지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 있음)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래 채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음압실에서 채취(음압 시설이 없는 경우,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부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

(필수 검체) 상기도, (선택 검체) 하기도, 혈액 등 기타 검체

2] 검체 채취 방법

○ 상기도 검체 채취 방법

-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각각 채취*하여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수송

* 잘 구부러지는 비인두용 스틱과 단단한 구인두용 스틱을 구분하여 사용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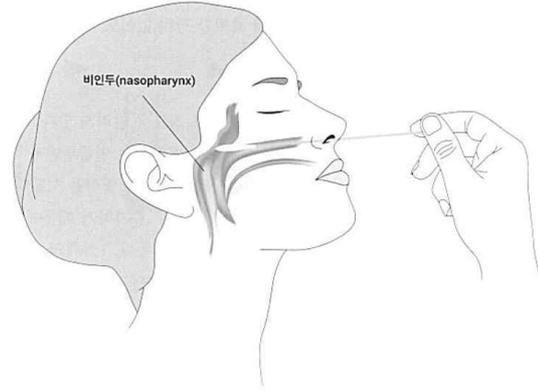
* 유튜브 영상 참고: <https://youtu.be/hXohAo1d6tk>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구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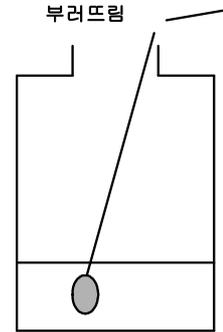
<비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 출처: ADAM, 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TEPIK)

< 상기도 채취 방법 >

- 검체 용기 보관 방법
 - 수송배지가 담긴 병에 도말한 면봉을 담고 병마개 부위에서 면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단단히 잠그도록 한다.
 -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한다.
 - 검체가 담긴 병은 즉시 냉장고(4℃)에 보관한다.
- 검체채취 후 반드시 채취용기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및 채취일을 기입한다.
- 검사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한다.(4℃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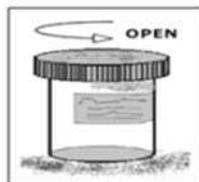


○ 하기도 검체 채취 방법

- 가래(Sputum) : 환자 스스로 구강 내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채취
 - * 검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송 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3중 포장)



1. 구강 세척



2. 무균용기 사용



3. 기침하여 가래 채취



4. 완전 밀봉 (4℃ 유지)

<가래 채취 방법>

③ 검체 포장

○ 검체 포장 방법

-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한 후 라벨 작성
 - * 병원명, 검체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시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
-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
-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아이스팩)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
-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식, UN 3373 표식, 방향 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

표. 3중 포장용기 예시

구 분	1차 용기	2차 용기	3차 용기
포장용기			